

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 별표1 】 제증명등 수수료중 (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등) 란의 제6호 보건사회관계란중 제(1)목 및 제(2)목을 다음과 같이하고, 제(3)목을 삭제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6. 보건사회관계			
(1) 의원, 부속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 개설 신고(허가) 신청	1 건	30,000원	
(2) 의원, 부속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 개설 장소이전 및 신고(허가)사항 변경신고(허가) 신청	1 건	2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액	구분	기준	요액
6. 보건사회관계			6. 보건사회관계		
(1) 부속의료기관개설및 변경허가신청	1 건	1,000 원	(1)의원, 부속의원, 치과의원 한의원, 조산소 개설신고 (허가)신청	1 건	30,000원
(2)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신청	"	500 원	(2)의원, 부속의원, 치과의원 한의원, 조산소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(허가)사항 변경 신고(허가) 신청	1 건	20,000원
(3)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신고사항변경신고	"	500 원	(삭제)		